#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실시 안내

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학전문대학원생의 2025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 니다.

## 1.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

- 가. 실무수습 시간 : 총 80시간으로 운영
  - ·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(16시간) +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(64시간)
- 나. 실시시기
  - ·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: 2026. 1. 5.(월) ~ 1. 6.(화)
  - · 법원별 실무수습 : 2026. 1. 7.(수) ~ 1. 16.(금)
- 다.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~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 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#### 2. 사법연수워 사전강의

- 가.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(민·형사 절차론 등)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
- 나.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
- 다.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: 추후 공지 예정
- 라. 장소 :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(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)

### 3. 법원별 실무수습

- 가.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
  - · 서울중앙지법,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, 서울북부지법, 서울서부지법, 의정부지법, 인천지법, 수원지법, 춘천지법, 대전지법, 청주지법, 부산지법, 울산지법, 광주지법, 전주지법, 제주지법
  - · 고양지원, 남양주지원, 부천지원, 평택지원, 안산지원, 안양지원, 속초지원, 공주지원, 천안지원, 제천지원, 부산동부지원, 목포지원, 군산지원

- 나.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 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
- ※ 대구지법, 창원지법, 성남지원, 여주지원, 강릉지원, 원주지원, 영월지원, 홍성지원, 논산지원, 서산지원, 충주지원, 영동지원, 대구서부지원, 안동지원, 경주지원, 포항지원, 김천지원, 상주지원, 의성지원, 영덕지원, 부산서부지원, 마산지원, 진주지원, 통영지원, 밀양지원, 거창지원, 장흥지원, 순천지원, 해남지원, 정읍지원, 남원지원은 기본과정 3차를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

## 4. 실무수습 지원자격

- 가.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(2025. 12. 이수예정자 포함)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
- 나. 다만, [별지 1] 「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(기본 3차)」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함
- 다. 제16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입상자는 [별지 2] 「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수입상자 명단」 기재와 같으며 <u>우수입상자</u>에 대하여는 우선적 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

#### 5. 실무수습 인원

- 가. 수습인원 : 약 167명 [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]
- 나.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
  - ·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
  - ·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 함
- 다.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,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,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
- ※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, 특별한

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

## 6.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

- 가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생 중 **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**에 따라 추천
- 나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[별지 1] 「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(기본 3차)」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
- 다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, 2차 이수자 및 2026년 1월 병행 실시되는 심화과정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기본과정 3차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
- 라.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 로 선정할 예정임

## 7.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

- 가. 실무수습생의 희망,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(6개 고등법원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함)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되, 법학 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
- 나.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,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(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,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)
- 다.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<u>2025. 12. 중순경</u> 법학전문 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

#### 8. 실무수습 내용

- 가. 사전강의 : 위 제1, 2항의 해당 부분 참조
- 나.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
  - ·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
  - 민사재판실무 :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,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

- 형사재판실무 :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
- •지도관 부여 과제 등
- 다.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 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

## 9.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

- 가.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(민사·형사지도관)을 지정하여 실무 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
- 나.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
- 다.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

#### 10. 지위서류

- 가. 법원실무수습 지원서(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[별첨 1] 활용, 법원 실무수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[별첨 2]도 함께 제출)
  - · 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
  - <u>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</u>(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, 법원 실무수습 지원서 하단에 추천 확인을 받으면 됨) - 반드시 필요
- 나.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<u>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</u>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다. 사진 파일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 포할 예정이니,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재연 주무관(kk5636@scourt.go.kr) 으로 일괄 송부해야 함

#### 11. 절차 관련 안내사항

- 가. 기본과정 3차 지원자는 반드시 <u>2025. 11. 12.(수)까지</u>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법원실무수습 지원서(하단의 추천 확인 포함) 및 사진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에 맞춰 실무수습생을

추천하고, 2025. 11. 13.(목)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원실무수습 지원서를 송부하여야 하고, 이 때 [별첨 3]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실무수습생 명단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.

- 다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<u>2025. 11. 19.(수)까지</u> 사법연수원에 각 법학전 문대학원으로부터 취합된 지원서 및 지원자 명단을 정리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.
- 라. 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, 각급 법원 배정,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,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<u>2025. 12. 중순경</u>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마.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,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재연 주무관(031-920-3457) 또는 법실무교육교 수실 박상렬 교수(031-920-3153)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끝.

[별지 1]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(기본 3차)

권 역		대 학 원 명		총 정원	대학별 배정인원 (약 8%)
서울	서	울	대	150	12
	고	려	대	120	10
	성	균 관	대	120	10
	연	세	대	120	10
	ो	화 여	대	100	8
	한	양	대	100	8
	경	희	대	60	5
시물 권역	서	울 시 립	대	50	4
변국 (15개교)	아	주	대	50	4
(15/¶±L)	인	하-	대	50	4
	중	o}-	대	50	4
	한	국 외	대	50	4
	강	원	대	40	4
	건	국	대	40	4
	서	강	대	40	4
		계		1,140	95
대전	충	남	대	100	8
권역	충	북	대	70	6
(2개교)		계		170	14
대구	경	북	대	120	10
권역	영	남	대	70	6
(2개교)		계		190	16
부산	부	산	대	120	10
권역	동	아	대	80	7
(2개교)		계		200	17
	전	남	대	120	10
광주	전	북	대	80	7
권역	원	광	대	60	5
(4개교)	제	주	대	40	3
		계		300	25
합계		25개교		2,000	수용가능인원 167명